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24 발의연월일: 2024. 7. 24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이학영 · 맹성규

안태준 • 이연희 • 조 국

권칠승 • 정준호 • 김병기

정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,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17).

법률 제 호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7의 제목 중 "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"을 "공공산후조리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시·도지사"를 "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"로, "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"를 "지역의 산후조리원 수요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	제15조의17(<u>공공산후조리원</u> 설치)
<u> 조리원</u> 설치) ① <u>시·도지사</u>	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관</u>	<u>ス</u>]
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	역의 산후조리원 수요
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	
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	
조리원(이하 이 조에서 "공공	
산후조리원"이라 한다)을 설치	
•운영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